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16 발의연월일: 2021. 5. 14.

발 의 자:이용빈・양정숙・서영석

박찬대 • 이용호 • 이용선

장경태 · 강득구 · 윤준병

한준호 · 김민석 · 전혜숙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함) 는 그 동안 다채널방송 및 정보화 사회 구현, 지역민주주의의 신장 및 지방분권화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왔음.

그런데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인터넷+IPT

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이어서,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음.

한편,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 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종합유선방 송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 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 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 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